



제 418회 국회(정기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대안교육기관 경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

■ 강득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345호)

2024.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강대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 지방자치단체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및 규칙 현황	8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강득구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4. 7. 29.

다. 회 부 일 : 2024. 7.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해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대안교육기관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조례 등을 통해 경비 지원 근거가 마련된 시·도의 대안교육기관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책 수립·시행 시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대안교육기관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범위, 절차 등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12일 제정됨.

“대안교육기관”¹⁾은 「초·중등교육법」 제4조²⁾에 따른 교육감의

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³⁾와는 달리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⁴⁾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의미하며, '24.6. 기준 256개소가 등록되어 있음.

<등록 대안교육기관 현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78	9	7	7	12	11	2	1	69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8	4	7	6	11	11	7	6	256

자료: 교육부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 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대안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의 등록 등)

①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안교육에 필요한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와 교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교육목표
5. 학칙
6. 경비와 유지방법
7.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8. 교직원 배치계획서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관련, 같은 법 제3조5)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6)는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 관련 연구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에 직접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규칙7)8)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5)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6)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1조(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① 교육부장관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 관련 연구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안교육기관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2. 대안교육기관 현장지원
3. 대안교육기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대안교육기관의 교직원 등에 대한 연수
5.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보공유
6.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업무

7) (예시)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6조(대안교육기관의 지원) ① 도지사는 대안교육기관이 사업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2. 대안교육기관 학생 급식지원
3. 학생의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사업
4. 대안교육기관의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청소년활동안전공제 공제료
5.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대안교육기관의 시설규모, 학생인원,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 사업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8) 불임자료 ‘지방자치단체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및 규칙 현황’ 참조.

별로 자율적으로 급식, 교복,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음.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책 수립·시행 시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대안교육기관이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는 대안교육기관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 유무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별 지원 격차를 해소하여 교육 소외 지역이나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에서도 고품질의 대안교육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하여 중복되거나 낭비되는 자원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분배할 수 있으며, 국가는 큰 틀에서의 방향성과 정책을 유지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대안교육기관 운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교육부는 안 제3조제2항의 경비 지원의 주체 관련하여, 대안교육기관 등록제가 등록을 시·도교육감에게 하도록 규정⁹⁾하고 있으므로 시·도

교육감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공·사립학교 설립 인가 및 재정 지원도 시·도교육감의 자치사무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학교 운영과 관련한 재정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도 국가가 아닌 지자체(시·도교육감 등)가 지방비를 활용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3조제3항에서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경우 지자체의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고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지자체가 자체 재정여건 및 지역 내 대안교육기관 현황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의 세부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편, 기획재정부는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및 취소를 담당하는 등 초·중등 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대안교육기관 관련 업무는 ‘지자체 교육·학예 관련 사무’에 해당한다면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운영경비 지원은 지자체(교육청 등)에서 조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비 등을 활용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9)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의 등록 등) ①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안교육에 필요한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와 교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전라남도교육청은 현제도 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 소속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으며, 대안교육기관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무관하므로 개정안 중 대안교육기관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 조항(제3조제2항 및 제3항)은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184

참고자료

지방자치단체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및 규칙 현황

조례 및 규칙	시행일자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2024. 5. 16.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2021. 7. 14.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2022. 1. 3.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2022. 7. 7.
공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2023. 3. 15.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2023. 11. 1.
광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2024. 7. 1.
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2023. 3. 20.
김포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2021. 11. 8.
담양군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9. 25.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2022. 1. 13.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조례	2019. 8. 9.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2022. 4. 15.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2022. 4. 13.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2023. 1. 12.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지원 및 위탁 등에 관한 규칙	2017. 12. 1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2021. 12. 10.
순천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3. 31.
시흥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교복지원 조례	2020. 2. 22.
양주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	2019. 9. 23.
양평군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	2020. 6. 22.
여수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2022. 12. 30.
영덕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2020. 10. 23.
울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2023. 8. 10.
울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2023. 5. 18.
원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2022. 10. 12.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2024. 1. 1.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학생 생활복 지원 조례	2023. 1. 2.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2024. 3. 25.
전라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2022. 12. 2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2024. 1. 18.
파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2023. 12. 26.
하남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2021. 9. 24.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